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 : 2015. 05. 08.
 전면개정 : 2018. 08. 07.
 개정 : 2021. 02. 05.

담당 : 교학팀(950-5405)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제5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제9조(전문위원)	제10조(관계자 출석)	제11조(주관 등)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19조(예비조사)
제20조(본조사)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제24조(판정)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제28조(재조사)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제3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제31조(경비)	제32조(준용)	제33조(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본교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원, 직원, 연구원, 학부생, 대학원생을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6.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를 말한다.<신설2021.2.5.>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 소속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 대학의 연구개발의 과제 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의 2(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연구 신청 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에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4.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 시,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 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2.05.]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① 우리 대학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및 운영을 겸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판정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전문위원)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자 출석)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주관 등) 회의는 교학처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 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일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본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교학팀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본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부서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관련부서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7조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부서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교수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총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후속처리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총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조사결과외 제출) ① 조사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3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특 칙

제31조(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과 동시에 기존 「연구윤리 규정」은 폐지한다.
3. (소급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신설21.2.5.>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

(교내A형 / 교내B형 / 정책연구 / 일립논총 / 기타)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총 연구비	(지원기관명) 한국성서대학교	(지원액)	원
참여 연구원	연구책임자(성명/소속/직위)		
	공동연구자(성명/소속/직위)		
	특수관계인(성명/소속/직위)		

 특수관계인 유형(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특수관계인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해당< >란에 √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1.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논문 작성과 무관) < >	2.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역할 및 활동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을 첨부함

--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서<신설21.2.5.>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서

(교내A형 / 교내B형 / 정책연구 / 일립논총 / 기타)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총 연구비	(지원기관명) 한국성서대학교	(지원액)	원
참여 연구원	연구책임자(성명/소속/직위)		
	공동연구자(성명/소속/직위)		
	특수관계인(성명/소속/직위)		

특수관계인 유형(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Conference)		학술지(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대회명 : - 발표논문명 :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참여저자 :		- 학술지명 : - 논문명 : - 논문 투고 예정일 : - 참여저자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수행**	원고초안작성***	최종원고확정****
저자A				
저자B				
특수관계인				

* 연구기획 :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적립 등

** 연구수행 :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 원고초안작성 :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 최종원고확정 :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 주의사항 :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기획	연구수행	원고초안작성	최종원고확정	전체기여도	확인서명
저자A	()%	()%	()%	()%	()%	
저자B	()%	()%	()%	()%	()%	
특수관계인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예시)

항목	내용(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A, 공저자는 저자B, 저자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한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A가 하였고, 이를 저자C가 보완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A	저자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기준표<신설21.2.5.>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기준표

(교내A형 / 교내B형 / 정책연구 / 일립논총 / 기타)

기준사항	평가내용
1.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하였는가?	
2.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는가?	
3.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실험, 측정,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찰 등)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저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4.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의 생산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는가? 또한 이 내용이 논문의 최종본에 포함되어 있는가?	
5. 투고 논문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코멘트, 수정 및 보완)를 하였는가?	